

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4-38호

『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4년 9월 18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가. 인천 정신과 문화유산 계승을 통한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의 지정 심의 기간을 정하여 문화재 지정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
- 나. 문화재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유·무형 문화재의 가치 제고를 통하여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에 이바지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지정문화재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심의 기한을 정함. (안 제16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9일(월)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,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(참조 :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24, 팩스 032-440-8764, 이메일 ysi3312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 ○성 명 : 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6항 중 “시문화재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”를 “예고가 끝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지정) ①~⑤ <생략>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와 제5항에 따른 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<u>시문화재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.</u>	제16조(지정) ①~⑤ <현행과 같음> ⑥ ----- ----- ----- <u>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</u>

[별첨 1]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

관계법령	☐ 문화재보호법 - 제23조(보물 및 국보의 지정) ☐ 문화재보호법시행령 - 제11조(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)
관련법규 정비대상	
관련자료	

관계법령 발췌사항

【문화재보호법】

제23조(보물 및 국보의 지정)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【문화재보호법시행령】

제11조(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)

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재정수반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
추계가 어려움

3. 미첨부 사유

- 「문화재보호법」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
개정하는 사항으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이 없음

4. 작성자 : 문화복지위원회 공 병 건 의원